

『구미시 청소년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5년 6월 29일

나. 제 출 자 : 구 미 시 장

다. 회부일자 : 2015년 7월 1일

라. 상정일자 : 2015년 7월 8일

제197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상정, 질의, 토론

2015년 9월 10일

제198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상정, 질의, 토론,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 설명자 : 복지환경국장 최 윤 구

나. 제안이유

「청소년 기본법」 및 그 밖의 청소년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구미시 청소년육성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청소년육성위원회와 청소년지도위원회에 대한 규정과 함께 청소년 활동의 지원, 청소년교류활동의 지원, 청소년복지의 증진 및 청소년보호의 수행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청소년활동의 지원을 위한 근거 마련
 - 청소년활동의 지원을 위해 개인·법인 또는 단체에게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을 명시(안 제4조)
- 청소년교류활동의 지원을 위한 근거 마련
 - 청소년교류활동 프로그램의 개발, 운영 및 국제청소년교류활동을 시행하는 민간기구 등에 대한 지원 근거 명시(안 제5조, 제6조)
- 청소년복지의 향상을 위한 노력 의무와 지원 근거 마련
 - 사회적으로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에 대한 우선적인 배려와 복지지원을 위한 근거 명시(안 제7조)
- 청소년유해환경의 개선을 위한 노력 의무와 지원 근거 마련
 - 청소년보호를 위해 청소년유해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 의무와 자율적인 감시고발 활동 지원 근거 마련(안 제8조)

라.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청소년 기본법」 제8조, 제11조, 제16조, 제27조, 제47조, 제49조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5조, 제53조, 제54조, 제60조
 - 「청소년 보호법」 제5조
- 예산조치 : 해당 없음
- 합 의 : 기획예산담당관과 합의됨

3. 검토보고의 요지 - 전문위원 백 인 업

○ 본 조례안은

「청소년 기본법」 및 그 밖의 청소년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구미시 청소년육성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청소년육성위원회와 청소년지도위원회에 대한 규정과 함께 청소년활동의 지원, 청소년교류활동의 지원, 청소년복지의 증진 및 청소년보호의 수행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제출된 안건임.

○ 주요 내용은

- 안 제4조에서 청소년활동의 지원 대상 사업을 명기하였고,
- 안 제5조, 제6조에서 청소년교류활동의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고,
- 안 제7조에서 청소년복지의 향상을 위한 노력 의무와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고,
- 안 제8조에서 청소년유해환경의 개선을 위한 노력 의무와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음.

○ 검토결과

-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14.11.29. 시행) 및 「구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15.4.29. 공포, 시행) 개정에 따라 보조금의 지출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안 제4조에서 제8조까지의 규정을 신설하는 등 구미시 청소년육성 정책을 효율적이고 능동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존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